



해외통관애로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최근 정책 추이

강경훈 |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

REPORT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최근 정책 추이



강경훈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



1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원활화 추진동향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마치고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 실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주요 경제지표도 기대치 이하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원활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22년 1월 RCEP 발효 이후 금년 6월 2일 필리핀 발효¹로 RCEP 15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발효·시행하고 있다.

금년 2월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RCEP 1년간 실적에 따르면 RCEP회원국과의 대외무역은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입총액은 12조

9,500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그중 8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입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보였다.

RCEP의 특혜 중 하나인 '원산지 누적기준'을 수출입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총 673만 부를 발행하였으며 수출가치 2,353억 위안, 관세인하 효과 15억 8천만 위안, 세금감면 15.5억 위안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금년 6월 12일 해관총서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16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1 시행 첫해 관세인하 상품 수 95.1%, 무관세 상품 수 66.9% 차지

내용상 16개 조치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출입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해관관리 감독모델의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관관리 감독모델 종류	내 용
가. 선측직접인출(船边直提)	사전신고 기반으로 항구에 도착 후 세관검사 없이 화물을 수입
나. 도항직접인출(抵港直装)	사전신고 기반으로 화물을 부두로 직접운송, 선적 후 수출
다. 연동연결 및 하역(联动装卸)	세관의 관할이 다른 두 개의 항구가 연계해서 하나의 항구에서 수입통관 이후 다른 항구로 국내운송

두 번째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건설의 심화 추진, 스마트항구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RCEP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와 편리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수출환급처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고 자진신고의 면책 범위를 확대, AEO 상호 인증 및 AEO 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수출입의 편리성을 확대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관의 통계 서비스를 강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 중국 통관행정의 변화

중국은 통관 방식 및 절차를 전산화를 통해 이미 일원화하여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전에 지방해관에서 서류심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없어지고 해관총서 아래 위험통제센터² 및 세수징수 관리센터³에서 전국해관에서 신고된 화물을 총괄, 과세징수를 관리하는 통관 일체화(一體化)를 시행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지 세관신고 제한이 없어져 수출입 기업은 원하는 어느 세관에서든 수출입신고가 가능하다.

기업 측면에서는 수출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화되어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해관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통일된 규범과 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관시(關係) 등 편법으로 해관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 관할지 해관의 담당자가 재량으로 해결

하던 문제는 규범화, 제도화되었고 세관 인맥으로 해결은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일 제품인 경우 통관 시 가격신고, 품목분류를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하고 자의적이고 일시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해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 번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중국과의 수출입통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2 소재지(상해, 광저우 황포, 칭다오): 위험관리 총괄, 수입금지 물품, 라벨링 및 저작권 위반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

3 소재지(베이징 및 톈진, 상해, 광저우):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 과세징수 관련 업무 수행

4 16년 6월 상해에서 통관일체화 시범사업을 거쳐 18년 전국으로 확대

3 중국 해관총서의 관세정책의 중점방향

해관총서는 금년 초에 2023년 관세정책의 중점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해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입상품의 신고절차도 상품목록, 세금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상품검사 및 검역부서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항구'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 중국과 교역 시 유의사항

중국은 장기간 코로나19 방역과 봉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중국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관은 이전에 못했던 세수 확보를 위한 심사강화와 탈중국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한 수출통제, 수출허가 품목의 지정을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이 중국과의 교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수출입 시 세관 관리감독조건 및 검역조건⁵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내 주요 원자재 및 이종용도물자에 대한 수출금지 및 수출허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장기적인 조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수부족과 코로나19로 정체되었던 과세가격 평가와 로열티 등에 대한 사후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해관의 사후심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관 시 품목분류에 대해 해관이 인정하지 않거나 랜덤검사 대상일 경우 여전히 빈번하게 통관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등 사전에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5 세관 관리감독조건(코드 1~9, A~Z까지 제출양식 규정) 및 검역 종류(M, P, Q, R등)

예) HS코드 1701120090(향료 및 착색제가 없는 무가당 사탕무원당)은 세관 감독조건 7AB, 검사 및 검역 종류 M/P/R/Q, S

7: 자동수입허가증 필요 / A: 수입상품 통관신고서 / B: 수출상품 통관신고서

M: 수입검사 / P: 동식물검역 / R: 식품위생검사 / Q, S: 수출 시 동식물 검역 및 식품위생검사